

**붙임 1**

**「2020년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」 추천안내**

□ 사업개요

- 사업비 / 사업량 : 456,000천원 / 120호 \* 호당 3,800천원
- 지원대상
  -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0년 기준 중위소득\* 70%이하(4인기준 332만원)이고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·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자가·임차가구

\* 2020년 기준 중위소득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3호)

[단위 : 원]

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
1,757,194원	2,991,980원	3,870,577원	4,749,174원	5,627,711원

- 지원내용 : 주택 내·외부 맞춤형 편의시설, 주거환경개선 항목
  - ※ 주거환경개선(도배, 장판, 간단수리, 청소 등)
- 사업시행 : 경기도시공사

□ 지원가구 추천

- (추천방법) 읍면동에서 홍보\*·접수(붙임3 신청서식) 후 추천 명단 제출(별도 붙임)
  - \*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 홍보 강화
- 유의사항
  -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지원사업 동의서\* 제출 \* 4년이상 거주동의 포함
  - 중도 포기 사례가 없도록 단기간 내 이사계획 등 파악
  - 비주택(비닐하우스, 움막, 컨테이너 등)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
  - 수선유지급여(주거급여) 수급권자,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,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(최근 7년 이내) 제외

≤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≥

※ 시군별 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,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- 1차 소득기준 : ①생계급여수급자가구 ②의료급여수급자가구 ③주거급여수급자가구 ④차상위 가구 ⑤중위소득 70%이하가구 - 2차 장애유형 : ①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, 뇌병변, 시각 장애인 ②지체, 뇌병변, 시각장애 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③65세 이상 고령자
---

□ 사업일정(안)

- 사업 수요조사 및 건의사항 수렴(1월) → 사업 시행계획 시·군 통보(1~2월) → 시군 대상가구 추천(2~3월) → 현지조사(4~5월) → 대상 가구 확정 및 공사시행(5~12월)

붙임 2

시·군별 중증장애인 현황

※ 통계대상 : 장애인연금 수급자(18세 이상 기준소득 이하 중증장애인) - 1.2급 및 3급 중복장애인('19.11.31기준)

시군	중증장애인 비율	중증장애인(명)				
		계	기초생활수 급자	차상위계층	차상위 초과	시설수급자
경기도	100%	71,694	25,808	6,169	34,887	4,830
수원시	7.69%	5,513	1,874	520	3,008	111
성남시	6.94%	4,973	2,192	354	2,284	143
의정부시	4.15%	2,972	1,165	240	1,451	116
안양시	3.56%	2,551	862	180	1,460	49
부천시	6.67%	4,780	1,811	397	2,442	130
광명시	2.48%	1,777	752	110	898	17
평택시	3.88%	2,785	1,082	271	1,359	73
동두천시	1.43%	1,023	428	85	408	102
안산시	5.48%	3,927	1,654	425	1,674	174
고양시	7.73%	5,542	1,951	437	2,737	417
과천시	0.28%	202	70	14	114	4
구리시	1.45%	1,038	420	62	546	10
남양주시	5.37%	3,847	1,306	304	1,952	285
오산시	1.60%	1,147	345	96	550	156
시흥시	3.08%	2,208	782	185	1,157	84
군포시	2.04%	1,466	632	137	665	32
의왕시	1.02%	733	231	63	413	26
하남시	1.72%	1,233	417	111	689	16
용인시	5.67%	4,067	1,114	387	2,262	304
파주시	3.80%	2,724	986	237	1,298	203
이천시	2.21%	1,586	460	138	725	263
안성시	2.17%	1,554	548	113	710	183
김포시	2.64%	1,893	671	208	898	116
화성시	4.22%	3,023	934	319	1,486	284
광주시	2.66%	1,910	526	156	1,049	179
양주시	2.29%	1,645	661	179	693	112
포천시	2.15%	1,539	693	122	612	112
여주시	1.52%	1,089	391	100	457	141
연천군	0.70%	503	192	59	210	42
가평균	1.60%	1,145	214	47	248	636
양평균	1.80%	1,299	444	113	432	310



##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동의서

<b>소유자</b> (개조신청 주택 등기명의인)	성명	생년월일(주민등록번호 앞자리)
	전화번호(주택)	(이동전화)
	주소 우편번호(        -        )	

<b>임차인</b>	성명	전화번호(이동전화)
	주소 우편번호(        -        )	

1. 본인은 위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로서, 임차인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주택 개.보수 공사 시행에 동의합니다.

2. 본인은 해당 공사 후 최소 4년 이상 해당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장애인 가구의 의사에 따른 이주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)

년    월    일

동의인(소유자)

(서명 또는 인)

경기도지사 귀하

<b>동의인 제출서류</b>	동의인의 신분증 사본 1부(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)
---------------------	--



■ 민감정보 수집 · 이용

민감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	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
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	이름/주거유형/소득/장애유형 · 등급/주소/연락처
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	경기도시공사, 2019 ~ 2025 (7년)
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	귀하는 민감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당 가입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사업대상가구 선정 시 사업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

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※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,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, 제18조(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 제한),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·제공에 동의합니다.

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정보주체 이름 : (인)

(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) 법정대리인 이름 : (인)